클레이사격장 허가신청 안내 매뉴얼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Guns & Explosives Safety Technology Association

【 목 차 】

1. 클레이사격장 허가신청 안내 ····· 3

2. 클레이(트랩)사격장의 시설기준 안내 ····· 6

○ 2-1 트랩사격장 시설설비 관련 참고자료 사진 ····· 7

3. 클레이(스키트)사격장의 시설기준 안내 ····· 11

○ 3-1 스키트사격장 시설설비 관련 참고자료 사진 ····· 12

4. 서식 ····· 16

5. 협회의 기술검토 의견서(신규 또는 변경 허가 신청시) ····· 17

6.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완성검사 신청시) ····· 18

○ 붙임.1 사격장 허가신청서 ····· 19

○ 붙임.2 사격장등의 변경허가 신청서 ····· 21

○ 붙임.3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 23

○ 붙임.4 완성검사 신청서 ····· 24

1 클레이사격장 허가신청 안내

□ 허가대상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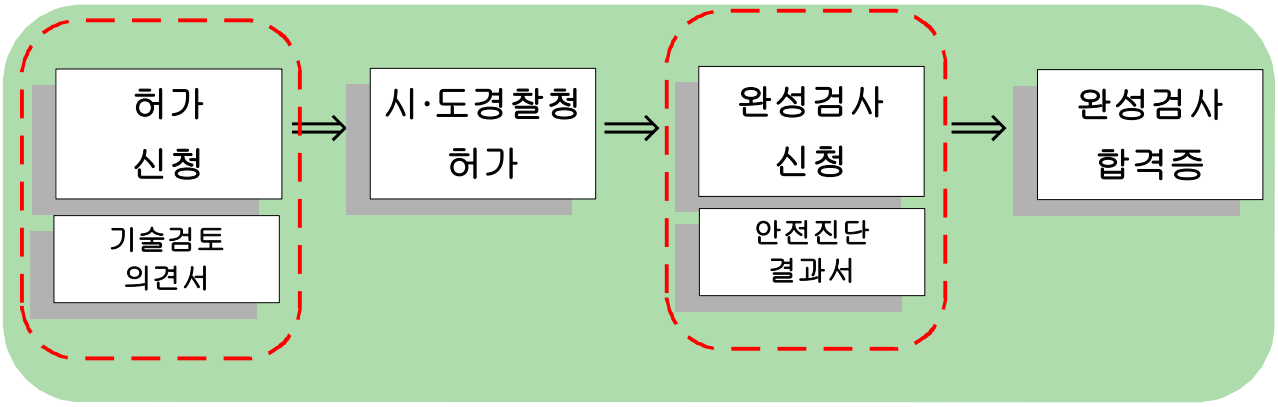
○ 클레이사격장 신설

○ 클레이사격장의 위치와 주요 구조 · 설비를 변경

□ 허가권자 (법 제6조)

○ 사격장 소재지 시·도경찰청장

□ 허가절차



○ **사격장을 하려는 자는 사격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음.**

○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및 안전진단결과서는 허가관청의 요구시 제출**

□ 허가신청 서류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시행규칙 제2조〕

○ 신청 : 사업장 관할 시·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 총포담당자

○ 서식 :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1. 사격장 설치설계도 1부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4. 사격장 관리규정 1부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명세서 1부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변경 허가신청 서류 〔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시행규칙 제3조〕

○ 신청 : 사업장 관할 시·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 총포담당자

○ 서식 :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 구비서류

1. 사격장 변경설계도 1부
2. 주요구조·설비의 변경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사격장의 위치가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되며, 사격장 위치가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사격장 설치허가증

□ 완성검사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설치허가 또는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 : 사업장 관할 시·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 총포담당자

○ 서식 :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클레이(트랩)사격장의 시설기준 안내

□ 관련법령(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트랩사격장)

- 트랩사격장의 구조 · 설비 기준

구분	구조 · 설비
사좌	1. 사격선이 명확할 것 2. 사대는 폭과 길이가 각각 90센티미터 이상 되고, 각 사대의 중심 간격이 2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4. 사격선이 활테형인 경우에는 그 양끝과 방출기 위치의 중심을 연결하는 각도가 40도 이하일 것
방출기	1. 방출기의 위치는 사격선으로부터 15미터 전방일 것 2. 클레이피전의 방출 범위는 사대의 중심과 방출기 위치의 중심을 연결한 선(1개의 방출기에서 방출되는 클레이피전을 둘 이상의 사대로부터 사격할 경우에는 사격선의 중심과 방출기 위치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의 연장선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좌우 45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방출기의 조작자를 위하여 설비하는 움의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5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 흙벽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耐彈性)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4. 방출기 움의 위끝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대와 같은 높이일 것
보유부지	1. 별도(평면도)에 표시된 법위의 위험구역을 포함하는 부지를 보유할 것 2. 발사탄에 의한 위해(危害)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위험구역은 제1호에 정한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위험구역 중 발사탄이 빈번히 통과하는 부분에 전선 등의 가설물이 없을 것
조명설비	1. 약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그 밖의 사항	1. 사격장의 주위에는 경계울타리, 경계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할 것 2.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3. 관람석은 사좌로부터 10미터 이상 후방에 있을 것
폐쇄회로 텔레비젼	1. 사좌(射座) 2. 출입구 3. 총기격납고 4. 실탄저장소 5. 그 밖에 사격장의 안전을 위하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

2-1 트랩사격장 시설설비 관련 참고자료 사진

1. 사좌(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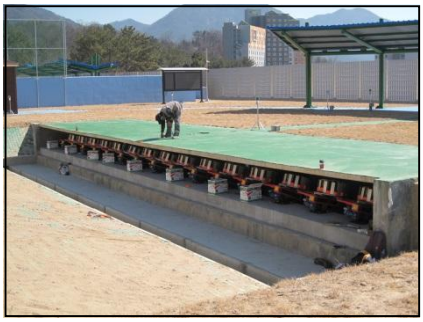
○ 사격선이 명확할 것.

○ 사대는 폭과 길이가 각각 90㎝이상 되고, 각 사대의 중심간격이 2m이상 되도록 할 것.

○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 사격선이 활테형인 경우에는 그 양끝과 방출기 위치의 중심을 연결하는 각도가 40도 이하일 것

2. 방출기(예시)





○ 방출기의 위치는 사격선으로부터 15미터 전방일 것

○ 클레이피전의 방출 범위는 사대의 중심과 방출기 위치의 중심을 연결한 선(1개의 방출기에서 방출되는 클레이피전을 둘 이상의 사대로부터 사격할 경우에는 사격선의 중심과 방출기 위치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의 연장선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좌우 45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방출기의 조작자를 위하여 설비하는 움의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5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흙벽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耐彈性)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 방출기 움의 위끝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대와 같은 높이일 것

3. 보유부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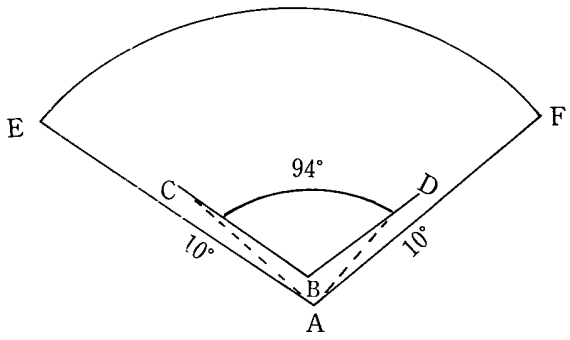


○ 별도(평면도)에 표시된 법위의 위험구역을 포함하는 부지를 보유할 것

○ 발사탄에 의한 위해(危害)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위험구역은 제1호에 정한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위험구역 중 발사탄이 빈번히 통과하는 부분에 전선 등의 가설물이 없을 것

[별표 1의2의 별도(평면도)]



A	사대의 앞끝선 중심
B	방출기의 위치
BC, BD	평지에서의 클레이피전의 최대 도달거리(그림에서는 75미터 이상)
AC, AD	사격한계선(C점과 D점을 사격한 경우의 탄도임)
AE, AF	발사한 탄알의 최대 도달거리
활테형의 EF	A를 중심으로 하고 AF를 반경으로 한 활테형
부채형의 AEF	위험구역
사격장의 위험구역은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은 각 사대의 위험구역 전부를 포괄하는 구역으로 한다.	

4. 조명설비

○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5. 그 밖의 사항(예시)







○ 사격장의 주위에는 경계울타리, 경계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할 것

○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 관람석은 사좌로부터 10미터 이상 후방에 있을 것

6. 폐쇄회로 텔레비전(시행령 제2조3항)

1. 사좌(射座)
2. 출입구
3. 총기격납고
4. 실탄저장소
5. 그 밖에 사격장의 안전을 위하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

3 클레이(스키트)사격장의 시설기준 안내

□ 관련법령(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스키트사격장)

- 스키트사격장의 구조 · 설비 기준

사좌	1. 사격선이 명확할 것 2. 사대의 위치 및 크기는 별도 1과 같이 할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방출기	1. 방출기의 위치 및 클레이피전의 방출방향은 별도 1과 같이 할 것 2. 방출기의 조작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움 중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3. 방출기 움에서의 클레이피전 방출구의 구조는 별도 2에 따를 것
보유부지	1. 별도 3의 범위의 위험구역을 포함한 부지를 보유할 것 2. 발사탄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정한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위험구역 중 발사탄이 빈번히 통과하는 부분에 전선 등의 가설물이 없을 것
조명설비	1. 약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그 밖의 사항	1. 사격장의 주위에는 경계울타리, 경계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할 것 2.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3. 관람석은 사좌로부터 10미터 이상 후방에 있을 것
폐쇄회로 텔레비젼	1. 사좌(射座) 2. 출입구 3. 총기격납고 4. 실탄저장소 5. 그 밖에 사격장의 안전을 위하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

3-1 스키트사격장 시설설비 관련 참고자료 사진

1. 사좌(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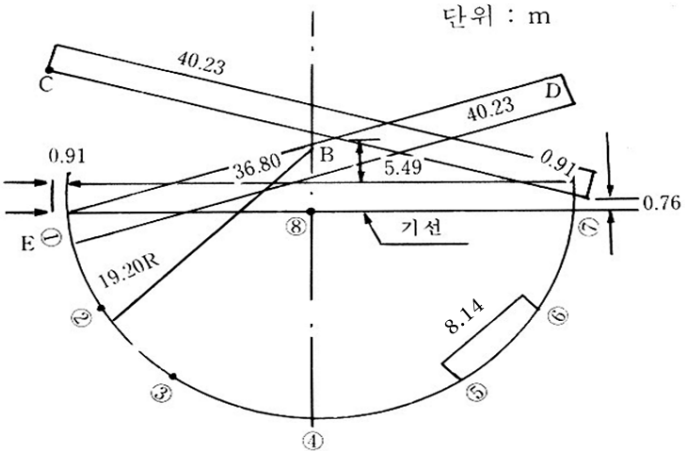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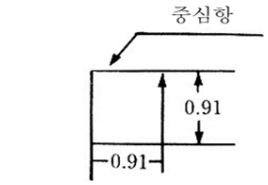
○ 사격선이 명확할 것

○ 사대의 위치 및 크기는 별도 1과 같이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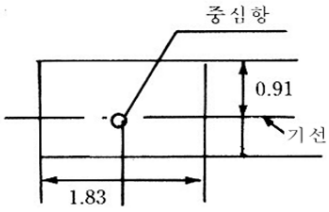
○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별표 2의 별도1(평면도)]





제 1 내지 제7사대의 크기



제8사대의 크기

E	좌측 방출기(높이는 사대의 면부터 3.05미터)
F	우측 방출기(높이는 사대의 면부터 1.07미터)
B	클레이피전 교차점
CD	사격한계 표시 중심항
EBD, FBC	클레이피전 방출방향
①-⑦	B를 중심으로 반경 19.2미터 활테 상에 8.14미터 마다 설치한 제1사대부터 제7사대까지의 위치의 중심항
8	제1사대와 제7사대를 연결하는 직선(기준선)의 중앙에 설치한 제8사대의 위치 중심항

2. 방출기(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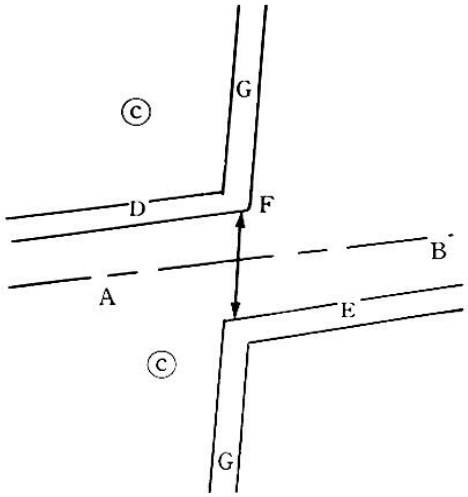


○ 방출기의 위치 및 클레이피전의 방출방향은 별도 1과 같이 할 것

○ 방출기의 조작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움 중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 방출기 움에서의 클레이피전 방출구의 구조는 별도 2에 따를 것

[별표 2의 별도 2 정면도(단면)]



AB	클레이피전 방출방향
ⓒ	방출기 움의 내부
D, E	발사탄의 클레이피전 방출구로부터 방출기의 움 내 침입 방지 추녀
F	클레이피전 방출구
G	방출기의 움

3. 보유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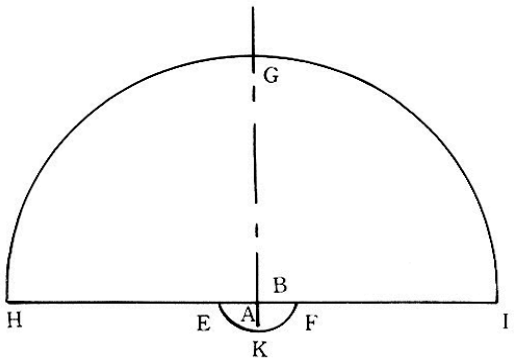
○ 별도 3의 범위의 위험구역을 포함한 부지를 보유할 것

○ 발사탄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정한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위험구역 중 발사탄이 빈번히 통과하는 부분에 전선 등의 가설물이 없을 것

[별표 2의 별도 3 평면도]



A	제8사대 중심
B	클레이피전 교차점
EAF	기준선
K	제4사대의 앞끝선의 중심
AG	사용산탄의 최대 도달거리
반원 HGI	A를 중심으로 하고 AG를 반경으로 한 반원
반원 HGI 및 반원상 EAFK	위험구역

4. 조명설비

○ 약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5. 그 밖의 사항







○ 사격장의 주위에는 경계울타리, 경계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할 것

○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 관람석은 사좌로부터 10미터 이상 후방에 있을 것

6. 폐쇄회로 텔레비전(시행령 제2조3항)

1. 사좌(射座)
2. 출입구
3. 총기격납고
4. 실탄저장소
5. 그 밖에 사격장의 안전을 위하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

4 서식

※ 사격장 허가 관련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다운로드-총포)에 있음.
https://www.gesta.or.kr/data/gun_list.php?kind=application_gun&kind_sub=list

※ 관련 법령은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음.
https://www.gesta.or.kr/data/law01.php?kind=law

□ **붙임 1.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 **붙임 2. 사격장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 **붙임 3.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 **붙임 4.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5 협회의 기술검토 의견서(신규 또는 변경 허가 신청시)

□ 협회 기술검토의견서

◇ 신청절차

1.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신청서-총포서식다운로드에서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내려받기

2. 기술검토에 체크하고 신청인등 내용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

3. 협회 총포안전처에서 접수 확인후 신청인과 기술검토 일정을 협의하여 사격장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 현장 방문하여 실사

4. 기술검토의견서를 문서로 받은 다음 사격장 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 총포담당자에게 제출(사격장 신청서 구비서류 참조)

○ 협회의 기술검토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별표2] 클레이사격장의 기준에 따라 사격장 설계도면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또는 사격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구조 및 설비가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보완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후 시설을 갖추도록 의견서를 문서로 발송함.

6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완성검사 신청시)

□ 협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신청절차

1.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신청서-총포서식다운로드에서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내려받기

2. 안전진단에 체크하고 신청인, 허가사항 등 내용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

3. 협회 총포안전처에서 접수 확인후 신청인과 안전진단 일정을 협의하여 허가받은 사격장 설치장소에 현장 방문하여 실사

4.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받은 다음 완성검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 총포담당자에게 제출(완성검사의 신청 구비서류 참조)

○ 협회의 안전진단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별표2] 클레이사격장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안전진단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후 진행하므로 시설기준, 허가시 허가조건, 기술검토시 보완사항 등을 확인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문서로 발송함.

붙임1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완공 예정일		영업시작예정일 년 월 일
사격장의 명칭		
사격장의 종류		
사격장 설치 장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격장 설치설계도 1부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4. 사격장 관리규정 1부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명세서 1부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공기총·석궁 외: 20,000원 공기총·석궁: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 사격장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나. 종업원의 임무와 배치 계획

다. 위해(危害) 방지설비 명세와 그 관리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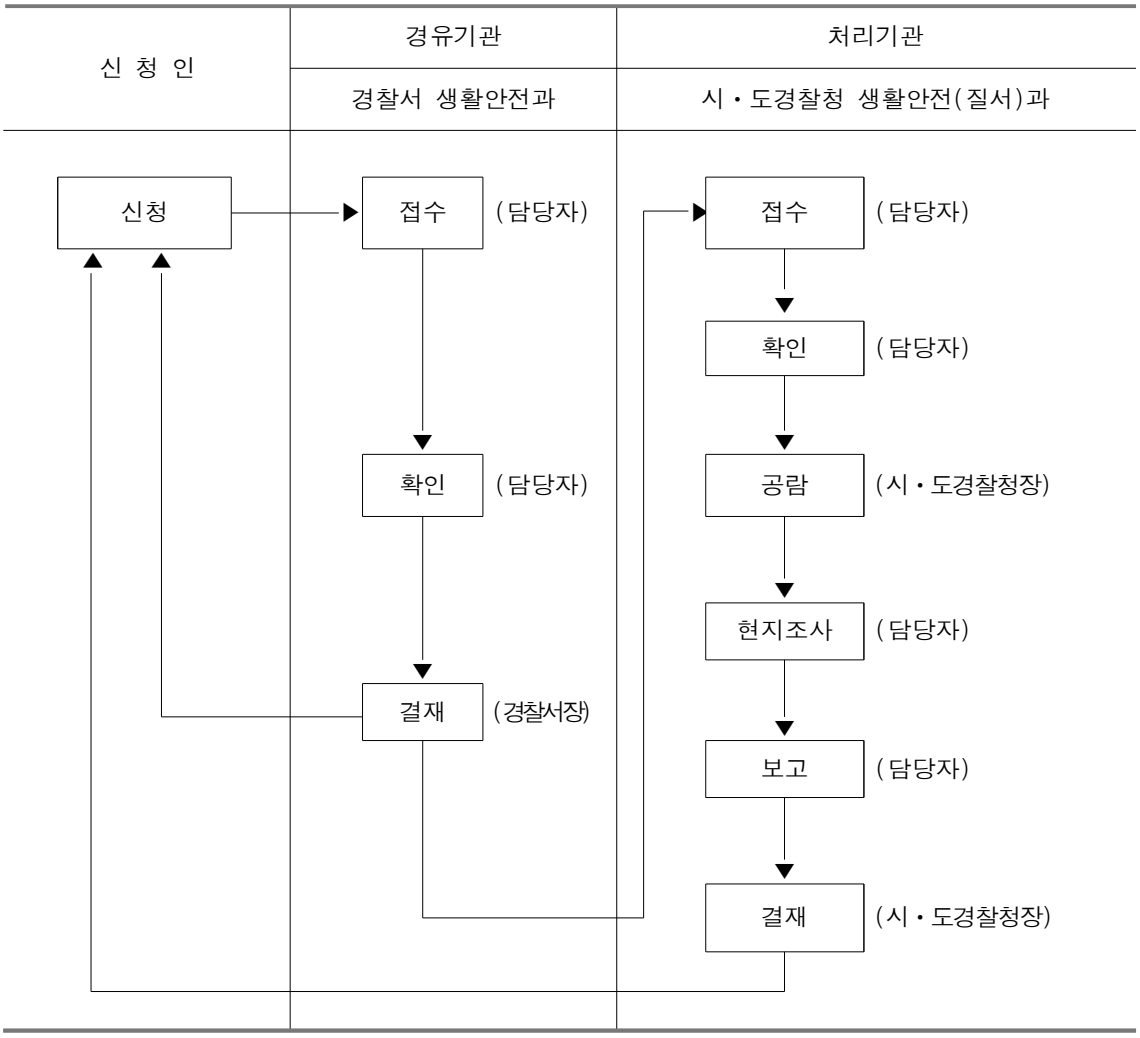
라.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마.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기·석궁의 단위 등으로 표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붙임2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2. 31.>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사항	허가번호	
	사격장의 명칭 (전화번호:)	
	사격장 설치 장소	
	착공일 년 월 일	준공일 년 월 일
변경내용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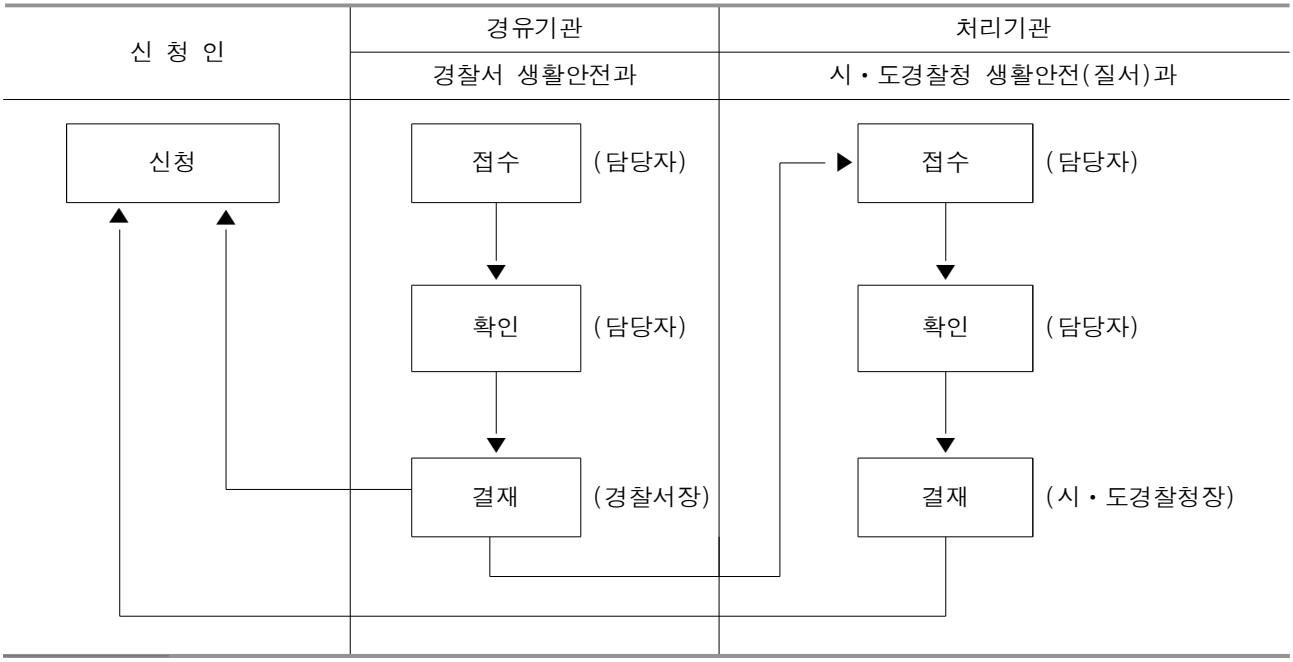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격장 변경설계도 1부 2.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 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4.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사격장 설치허가증 *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8,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신 청 인
경유기관
경찰서 생활안전과
처리기관
시・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
신청
접수
(담당자)
확인
(담당자)
결재
(경찰서장)
접수
(담당자)
확인
(담당자)
결재
(시・도경찰청장)

붙임3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 기술검토 □ 안전진단 신청서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공람	
		번호			
	처리부서	총포안전처			
	담 당 자				

① 신 청 인	성 명/회사명	(Tel: Fax:)
	주 소	(우편번호:)
② 시설의 종류		
③ 허 가 사 항		
④ 기 타		

* 위와 같이 시설(제조, 수리, 판매, 임대, 사격장)의 □ 기술검토 □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사장 귀하

※ 구비 서류
1. 허가증 1부
2. 기술지원비 입금 확인서 1부
   가. 계좌은행 : 하 나 은 행
   나. 계좌번호 : 168 - 910004 - 02804
   다. 계 좌 명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라. 수 수 료 : 제조업소[825,000원(부가세 포함)], 수리, 판매, 임대업소[385,000원(부가세 포함)]
   사격장[종목당 495,000원(부가세 포함)]

* 홈페이지 WWW.GESTA.OR.KR
TEL : 02-3272-4102
FAX : 02-3272-4101

붙임4 **완성검사 신청서**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2. 31.>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격장 명칭	(전화번호:)	
사격장 위치		
허 가 번 호		
사격장 시설의 내용		
검사받으려는 일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권총실내사격장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